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1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 박완수 · 백종헌 · 정동만

강대식 · 정진석 · 이채익

임이자・조경태・이종성

주호영·최춘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만 45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.

이 가운데 2020년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개인 형 이동장치의 운행자격, 운전자 및 장치의 안전장비 등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.

전동킥보드의 경우, 자전거 등에 비해 순간 가속도가 높고 제동의 안정성 등도 비교적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가능 연령을 상향 하고 야간 운행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임.

이에 만 16세 이상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

전자 연령 자격을 상향하고,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4항, 제50조제9항, 제16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"어린이의 보호자"를 "만 16세 미만인 자"로, "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한다.

제43조 중 "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"을 "자동차등"으로 한다.

제50조제9항 중 "자전거등"을 "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"로, "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"를 "켜고 운행하여야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자전거등의 형태에 따라 전조등과 미등의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운전자가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.

제16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5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행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	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	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어린이의 보호자</u> 는 도로에	④ <u>만 16세 미만인 자</u>
서 <u>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</u>	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여
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	<u>서는 아니 된다</u> .
<u>다</u> 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43조(무면허운전 등의 금지) 누	제43조(무면허운전 등의 금지)
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	
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	
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	
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<u>자동차</u>	<u>자동차</u>
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	<u> </u>
<u>다)</u>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	
제50조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	제50조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
① ~ ⑧ (생 략)	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<u>자전거등</u> 의 운전자는 밤에	⑨ <u>자전거, 개인형이동장치</u>
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	
등과 미등을 <u>켜거나 야광띠 등</u>	켜고
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.	<u> 운행하여야</u> .
<단서 신설>	다만, 자전거등의 형태에 따라

① (생 략) 제160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1. ~ 8. (생 략)
 <신 설>
- ③ ④ (생 략)

- 9. 제5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행한 사람
- ③ ④ (현행과 같음)